의 안 검 토 보 고

-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2. 건 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7년 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안 문 **분**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안건은 1997. 2. 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 2. 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안 제13조 제2항 단서·제2항 및 제16조의2)
- 나.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 다.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 라.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 (안 제20조 제3항)
- 마.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 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제8호 및 제23조 제9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ㅇ 주요내용은
 - 첫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 (안 제16조의 2) 하고, 지금까지 근속기간 기준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기준으 로 (안 제18조 제1항 제2항)하였으며

년간 병가나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경우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였음. (안 제18조 제3항)

- 둘째,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하여 지참 조퇴 및 외출8시간과 6일을 초과하는 병가등을 연가나 병가로 계산토록 하여 시간단위로 복무관리토록 하였음.

(안 제20조 및 제21조)

0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때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실적급제도 시행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철저한 기록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검토보고

-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2. 건 명: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7년 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안 문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안건은 1997. 2. 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 2. 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근거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재원을 시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함 (안 제16조)
- 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기금으로 일원화 함 (안 제1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과 문화예술진 흥법에 의해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으로써

ㅇ 주요내용으로는

- 기금조성 및 용도에 있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각각 분리 운영되었으나 이를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
- 기금의 조성재원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도 록 조정하였음 (안 제16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7년 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안 문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본 안건은 1997. 2. 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 2. 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전광역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 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내지 11조)
- 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 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과 동법시행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 성과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 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 ㅇ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 기본시책과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등을 심의토록하고 (안 제4조)
 - 둘째, 위원의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밭도서관장을 부위원장, 문화계장을 간사로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였음 (안 제5조)
 - 셋째,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서관·문고 및 독서업무 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서 임명 또는 위촉하 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 (안 제5조)
 - 넷째, 위원의 실비 변상측면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1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설치 근거에 따라 제정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원회의 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7년 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안 문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7. 2. 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 2. 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2년 월드컵 대전개최 분위기 조성을 가시화 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신생 대전씨티즌의 원활한 경기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의 축구붐 조성 및 축구열기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신생 대전씨티즌의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및 대전씨티즌과의 프로축구경기에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 (안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 나. 사용료 감면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안 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씨티즌의 프로축구단 출범과 함께 2002년 월
 드컵 대전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의 가시화와 지역의 축구열
 기 조성의 일환으로 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ㅇ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신생 대전씨티즌의 계획에 의한 훈련과 프로축구경기의 사용료를 전액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 둘째, 사용료의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음(안 부칙 제2항)
- 따라서 본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한 신생 대전씨티즌 축구단의 조기 정착과 향후 2002년 월드컵 대전유치 분위기

조성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행정적 지원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역의 축구 붐 조성 및 축구열기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